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 안	1633
번 호	

제출일자 : 2018. 12. 5

제 출 자 : 달성군수



1. 의결주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이웃이 단절되고 서로 소원해지는 현대 도시문화 속에서 공동체의식의 회복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목적, 정의, 기본원칙(안 제1조~3조)
- 나. 주민의 권리와 책무, 군수의 책무(안 제4조~5조)
- 다. 기본계획 수립(안 제6조)
- 라. 마을공동체 행정지원협의회 설치·운영(안 제7조)
- 마. 지원 대상 사업(안 제8조)
- 바. 신청, 평가·포상, 사업비의 환수, 형성재산의 사용(안 제9조~12조)
- 사. 준용(제13조)
- 아. 마을공동체 지역위원회 설치·운영(안 제14조~21조)
- 자. 시행규칙(안 제2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공직선거법」 제2조,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나. 예산조치 : 150,000천원(세부내용 비용추계서 참조)

다. 기타사항

(1)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2)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8. 10. 11. ~ 10. 31.(20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5) 비용추계서 : 붙임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을공동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마을공동체의 역량 강화 및 자립기반 조성 등 마을공동체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의 행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 나. 군에 소재하는 사업장·학교 등에 근무하거나 소속된 사람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의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공동체 사업”이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발전시키고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가 당면한 각종 문제를 해결하거나 마을의 발전을 위하여 마을공동체가 추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주민과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인식의 회복을 지향한다.
2.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3.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하여 추진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2장 마을공동체 사업

제6조(계획수립) ① 군수는 매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
3. 그밖에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본계획이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마을공동체 행정지원협의회) 군수는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사업

관련 부서들이 긴밀히 협조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마을공동체 행정지원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지원대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주거·교육·양육 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2. 자연환경 보호 및 보전
 3.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복지 증진
 4.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기관 지원 사업
 5. 마을공동체 사업과 관련된 교육·컨설팅 등 주민역량 강화
 6. 그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② 마을공동체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경우
 2.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를 지지하는 경우
 3. 특정 종교의 교리를 전파하는 경우
 4.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9조(신청) ① 주민 또는 기관·단체 등이 사업에 대한 지원을 신청할 때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사업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을 공모할 수 있으며 공모 방법과 절차 등은 따로 정한다.

제10조(평가·포상) ① 군수는 매년 사업의 결과를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고 향후 발전적 대안을 마련하

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주민 또는 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사업비의 환수) 군수는 사업비를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다른 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교부조건 등으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그밖에 정당한 사유와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을 중지하거나 지연한 경우

제12조(형성재산의 사용)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형성된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매매·양도·교환·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준용) 마을공동체 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지급하는 사업비의 교부방법 및 집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마을공동체 지역위원회

제14조(마을공동체 지역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사업 및 관련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변경
2. 지원대상 선정과 지원 범위
3. 사업에 대한 분석 및 평가
4. 그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구성) ① 지역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 어느 한 쪽의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마을공동체 업무 소관 부서 국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달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나. 학계 및 주민 대표, 마을공동체 관련 분야의 전문가, 마을공동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지역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마을공동체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6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품위 손상 또는 직무의 공정성 훼손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지역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역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회의) ① 지역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군수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개최를 요구한 경우
3.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전관련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전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한 경우
4. 그밖에 해당 안전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지역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전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0조(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요청) 지역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공직선거법」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한다.

□ 「지방재정법」

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별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가. 기간 : 2019년부터 연중

나. 주요 내용

- 이웃이 단절되고 서로 소원해지는 현대 도시문화 속에서 공동체意識의 회복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다. 지원 대상

- 주거·교육·양육 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 자연환경 보호 및 보전
-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복지 증진
-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기관·단체 지원 사업
- 마을공동체 사업과 관련된 교육·컨설팅 등 주민역량 강화
- 그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2. 비용 발생 요인

가. 홍보, 교육 및 컨설팅

나. 관련 기관·단체 지원

다. 지원 대상 사업에 대한 보조금

3. 관련조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8조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2019년부터 신규 추진할 사업에 대한 비용 추계

나. 추계 결과 : 150백만 원

○ 민간경상사업보조금 : 125백만 원($25\text{백만 원} \times 5\text{년}$)

○ 사업 추진 부대비용 : 25백만 원($5\text{백만 원} \times 5\text{년}$)

다. 재원 조달 방안: 군비

5. 연도별 비용추계표 : 불임

6. 작성자 : 경제환경국 일자리경제과 박성욱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세 입							
세 출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50,000
마을공동체 사업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50,0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군비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50,000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